

## 거창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4
----------	-----------

제출연월일	2011. 10. 0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다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함

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목적 및 추진방향, 식재수종,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가로수관련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라. 가로수 수종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은행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마. 도로, 도로시설물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와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등

바.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관리

사. 식재에 따른 비용부담 및 강제징수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관련 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별지서식)

아.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 작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1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2011. 8.18. ~ 9.09.)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계획 등
7.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종의 선정) ① 군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단풍나무
4. 산수유나무

5. 뱃나무 등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② 4차선으로 개설 및 확장된 국도와 지방도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2조·제15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제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li> <li>디프제 살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기: 6월 상순</li> <li>2회기: 8월 초중순</li> </ul>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가지 절단 소각</li> <li>사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li> </ul>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가지 절단 소각</li> <li>만코지 수화제 살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기: 5월 초중순</li> <li>2회기: 9월 초~중순</li> </ul>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덩어리 채취 소각</li> <li>디프제 살포</li> </ul>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li> <li>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관살포: 5월 하순 ~6월 초순</li> <li>나무주사: 6~7월</li> </ul>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li> <li>디프제 살포</li> </ul>	4월 중하순
응애류	벗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li> <li>(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li> </ul>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충제 살포</li> <li>(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li> </ul>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트 액제 살포</li> <li>(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li> </ul>	발생초기(수시)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p>△ 피해 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li> <li>◦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li> <li>◦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li> </ul>
<p>△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식재·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에 위반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나. 군수가 식재·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식재·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li> <li>◦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li> <li>○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li> <li>○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li> <li>○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li> </ul>	

[별지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